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2월 9일

나. 발 의 자 : 임춘구, 김태근, 강승수, 김성현,
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 박교상,
박주연, 윤종호, 이수태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임춘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인입 기피
-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차등이 발생하여 행정 불신 및 주민 위화감 조성
- 따라서 급수공사 신청 시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정액공사비 적용으로 비용 부담경감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수도물을 사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어 급수공사비 대지경계까지 200m이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- 구경 15mm이하 급수 신청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액 급수공사비 실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38조
- 예산조치 : 상수도 미 인입지역의 급수공사비를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 범위 내 일반회계에서 지원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상수도 미인입 주민들은 영세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
-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수용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신설급수 공사비를 배수원관 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,
- 현재 실액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함으로써 각 수용가마다 공사비 차등발생으로 인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

-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으로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코자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차후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을 특별 회계에서 부담으로 개정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